

부산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2712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미성년자이므로 피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4. E

5. F

6. G

변론 종결 2016. 8. 23.

판결 선고 2016. 9.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6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8.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피고 E과 연대하여 망 A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428,571원, 피고 C, 피고 D는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8.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피고 F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E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6. 12. 접수 제69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과 피고 G 사이에 2015. 6. 10.(등기부상 2015. 6. 9.) 체결된 매매계약은 49,138,07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E에게 49,138,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19.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산물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이고, 보험기간은 2014. 12. 24.부터 2017. 12. 23.까지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망인이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망인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과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E은 같은 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6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

1) 망인은 2015. 6. 2.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이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수산물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은 2015. 6. 5. 원고에게 49,746,251원(= 수산물대금 원금 49,199,019원 + 이자 547,232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7. 3.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보험금 50,000,000원(보험금 청구액과 추가로 발생한 이자의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이 피고 C, 피고 D가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5. 8. 5. 창원지방법원에 2015느단1005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라. 피고 E의 재산처분

1) 한편, 피고 E은 2015. 6. 10. 피고 F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5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2.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피고 E은 2015. 6. 9. 피고 G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16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5.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9호증의2, 4,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지급된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21,428,571원(= 50,000,000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피고 D는 각 14,285,714원(= 5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7. 4.부터 2015. 8.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란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 또는 불이행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 E에게 구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수산물 중도매인인 망인이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산물대금의 지급보증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정서 제3조 제1항은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사실,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망인의 채무 84,461,790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원인을 불문하고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보험사고의 정의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망인이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산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망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피고 E이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6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또한 피고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책임내용과 범위, 연대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 E이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6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 피고 C, 피고 D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8.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E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도에 앞서 2015. 6. 9.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E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아파트를 피고 F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F도 악의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F의 선의의 매수인 항변

피고 F는, 설사 피고 E의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매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 F는 단기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적당한 부동산매물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H로부터 이 사건 제1아파트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② 피고 F는 H의 중개로 2015. 6. 10.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157,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7,000,000원이며, 잔금 140,000,000원은

2015. 6. 12.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 F는 2015. 5. 18. J에 자신이 소유하는 김해시 K아파트 203동 1206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위 1206호를 담보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 E과 피고 F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는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

⑤ 이 사건 제1아파트의 2015. 1. 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08,000,000원이었고, 시가에 비하여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매가격이 8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정해졌으나, 이는 계약금지급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로 잔금지급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에는 이전에 경료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 F가 피고 E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피고 E과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피고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하나의 처분행위로 보아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와 피고 F, 피고 G는 서로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H와 피고 E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근접하여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E이 돈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매대금을 정하였기 때문에, 피고 F와 피고 G가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시기가 근접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사이의 어떠한 관련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E이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처분행위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6. 9.(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일이 2015. 6. 1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 E의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적극재산

이 사건 제1아파트 157,000,000원

○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② L에 대한 채무 32,000,000원

③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18,861,923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의 적극재산은 157,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90,861,923원(= 40,000,000원 + 32,000,000원 + 118,861,923원)으로서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G는 악의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G의 선의의 매수인 항변

피고 G는, 피고 E의 이 사건 제2아파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매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 G는 부동산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H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② 피고 G는 H의 중개로 2015. 6. 9.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16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6,000,000원이며, 잔금 152,000,000원은 2015. 6.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 G는 2015. 6. 9.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함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G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원, 위 H로부터의 차용금 22,000,000원,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담보로 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123,000,000원을 합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 E과 피고 G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

⑤ 이 사건 제2아파트의 2015. 1. 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13,000,000원이었고, 시가에 비하여 이 사건 제2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정해졌으나, 이는 계약일로부터

6일 후로 잔금지급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30,8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피고 E은 피고 G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잔금으로 2015. 6. 15.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 G가 피고 E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G는 피고 E과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준

별지